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법원” 을 “법원” 으로 변경〉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28호)

2026.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기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 지방 관련 법률 예시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1.

3. 회 부 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지방법원</u>	4. <u>법원</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② <u>법원</u> ----- ----- ----- ----- ----- ----- -----.
다만,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 <u>법원</u> ----- ----- -----.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③ ----- <u>법원</u> ----- ----- <u>법원</u> ----- ----- -----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략)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략)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략)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

-----.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

-----법원-----

-----.

② -----법원장-----

-----.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
법원-----

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

-----.

⑤ 법원-----
법원-----

-----.

제9조의2(판사회의) ① -----
-----법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법원-----

-----법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u>지방법원</u>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u>지방법원</u>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u>지방법원</u>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u>법원</u>----- ----- ----- -----<u>법원</u>----- ----- -----<u>법원</u>----- ----- ----- ----- ----- ----- ----- ----- ----- -----
④ (생략) 제27조(부) ① ~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u>지방법원</u>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u>지방법원</u> 소재지에서 사무를	④ ----- ----- ----- -----<u>법원</u>----- ----- ----- ⑤ ----- <u>법원</u>-----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생략)

제3장 지방법원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제28조(심판권) -----
-----.

-----.

1. 법원-----

2. 법원단독판사-----

3. (현행과 같음)

제3장 법원

제29조(법원장) ① 법원에 법원장-----.

② 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생략)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생략)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③ 법원장-----

-----.

④ 법원장-----

-----.

⑤ 법원-----
-----.

제30조(부) ① 법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
-----.

제31조(지원) ① 법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장-----

-----.

④ -----
-----법원장-----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 4. (생략)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 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

-----.

⑤ 법원-----
-----.

⑥ -----법원-----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법원

-----.

1. ~ 4. (현행과 같음)

5. 법원판사-----

6. -----법원-----

② 법원-----춘천
법원-----법원
단독판사-----

-----.

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

-----.

제33조(시·군법원) ① -----

--법원-----

-----.

-----.

② -----

법원장-----

-----.

-----.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

-----.

서 관할한다.

③ (생 략)

제36조(등기소) ① . ② (생 략)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생 략)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등기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장-----

-----.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원장-----

-----.

제55조(집행관) ① 법원-----

-----법원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원-----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 재판부의 설치) ① (생략)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 재판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u>지방법원</u>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 <u>법원</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지방’의 의미가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중심과 주변 지역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아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방’과 ‘지역’의 의미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이라는 용어는 ‘① 어느 방면의 땅’, ‘②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의미 외에 ‘③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른 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은 ‘지방법원’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수직적·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의미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지방’과 ‘지역’의 의미>

지 방	지 역
① 어느 방면의 땅 ② 서울 이외의 지역 ③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①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②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③ 「체육」 구기 경기에서, 경기자가 맡고 있는 일정한 구간

자료: 국립국어원

-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은 1949년에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서 18개 지방법원¹⁾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법원에서 1심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용어라기 보다 일정 지역을 지칭하는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음.

둘째, 「대한민국헌법」 제5장의 제목을 “법원”으로 하면서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법원의 의미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을 모두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음.

셋째, 「대한민국헌법」 제117조²⁾ 및 제118조³⁾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같이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행정처는 현행법 제정 당시부터 “지방법원”이라는 용어는 “대법원”, “고등법원”에 대비하여 심급의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서, 사전적 의미에 의할 때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심 외의 부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소외시키

2)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려는 의도가 없는 표현으로 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과 같이 서울 소재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도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이라는 표현은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개정안과 같은 용어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의 장·단점 및 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지방 관련 법률 예시
---------------	--------------------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동우회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역발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재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지방세징수법